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 : 2012년 4월 6일

O 회부일자 : 2011년 4월 10일

3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'지방재정 집행과정과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'결과 개선방안 권고사항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여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외부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며, 심의회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·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, 심의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함(안제5조).
- 나.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를 추가함(안 제6조).
- 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시기를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의결 전까지로 함(안 제13조).
- 라.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관련 지침에 맞게 정비함(안 제 41조).

마. 변상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함(안 제62조)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'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'의 권고사항 반영과 상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.
-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심의회 위원장을 부교육 감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였고,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 외 부 민간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, 공유재산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대상에 무상사용과 무상대부를 추가하였음.
- O 공유재산 관례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시기를 예산편성 의결 전까지로 하였고,
-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면적 시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에서 1,500제곱미터 이하로, 그 밖의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타 이하에서 3천제곱미터 이하로, 「농지법」에 의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·대부받아 계속 직접 경작중인자에게 20,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하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규정에 따라 인접 토지의 소유자에게 시의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,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현행 조례를 수정 하여 보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.

관계 법령 발췌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.

- 1. 삭제
- 2. 초등학교·공민학교
- 3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- 4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- 5. 특수학교
- 6. 각종학교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-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u>예산을 지방의회</u> 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.
 -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<u>지방</u>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행정재산의 사용・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<신설 2010.2.4>
-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 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<신설 2010.2.4>
-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숭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수 있다.
- 제34조(대부료의 감면)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□ 외국인투자 촉진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"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"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 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
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3. <u>"지식산업센터"</u>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,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77조(용도지역의 건폐율)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,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3조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<u>일반입찰</u>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(이하 "지정 정보처리장치"라 한다)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·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

- 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0.8.4>
- 제29조(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)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.
 - 13.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
- 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
 - 23. 재산의 위치·형태·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- 제81조(변상금)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·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□ **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라처분 기준 개정** (2010. 4. 행정안전부)

제4절 처 분

1. 공유재산의 일반 매각

나. 매각 기준

- 1) 법률에 의한 매각
 - 나)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업진홍지역 안의 농지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·대부하여 직접 경작중인 자에게 5년 이상 사용·대부받아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20,000㎡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하는 경우

3)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

- 가) 다음 어느 하나의 토지(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포함)로서 재산의 위치와 규모·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입찰·지명입찰·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음
 - (2) 재산의 위치, 규모·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,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로서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평정한 가격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2억원이하, 시의 동 지역에서는 1억원이하, 광역시·시·군의 읍·면 지역에서는 5천만원이하인 토지
 - (3) 최대 폭이 5m이하(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%미만 인 때 포함)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
- 나)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,500m², 시이외의 지역에서는

3,000㎡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

- (1) 점유·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
- (가)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하며,
- (나) 위 (1)에 의한 분할매각시 건축면적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
- (다) 위 각 항에 따라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서울 특별시·광역시의 동 지역은 300㎡, 시의 동 지역은 500㎡, 기 타 읍·면 지역은 1,000㎡ 이내로 한정
- (2)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위 나)의 1,500㎡ 또는 3,000㎡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(1)의 매각 범위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음

□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 영향평가 결과 통보

(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-1824, 2011. 6. 1.)

- 1. 공유재산 관리과정의 특혜요인 제거
 - 1-3 공공시설 청사 및 매점·자판기 운영자 선정 투명화
 - □ 개선방안

가. 공공시설 청사

- 공유재산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
 -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사용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의무화
 - 심의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심의 의 공정성을 확보
 - ※ 국유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유재산정책심 의위원회의 경우 15명의 위원 중에 민간 전문가가 8명으로 과 반수 이상
 -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 록 제착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장치 마련
 - ·위원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
 - ·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 - ·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
 - ·법률자문, 용역수행 등에 관여한 경우

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

(기획관리과-2606, 2011. 5. 18.)

3. 기본방침

-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**위원장(부위원장) 권한 분산**
- 자치법규 또는 자체계획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재구성 검토
 - 단, 위원회의 특성상 부교육감을 위원장(부위원장)으로 구성이 필요 한 경우는 제외
 - ※ 외부위원의 신분을 고려할 때 부교육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
 - ※ 위원회 결정 내용이 중요하고, 대외적인 권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
- 법령 상 위원장(부위원장)을 부교육감으로 명시한 경우는 재구성 제외

5. 위원회 정비 계획

가. 조례개정

○ 개정대상

연번	조 례 명	소관부서	비고
1	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	산업정보평생과	폐지
2	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	재무과	

○ 개정방법

- 소관부서별로 별도 계획 수립하여 별도 추진
 - ■향후 관련 조례 개정 사유 발생 시 위원회 재구성(안)을 포함한 조례 개정 추진